

도보



제1050호. 2022. 6. 2.(목)

도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목 차

입법예고

제2022-72호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정보공개>법무정보>자치법규>입법예고 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 제2022-1979호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한경면 청수리 2680-2 일원) …… 4
- 제2022-2068호 “핑크스 비오토피아 휴양리조트 개발사업”시행 승인(변경)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 5
- 제2022-2073호 삼매봉벨리 유원지 개발사업시행승인 변경(안) 열람공고 …… 6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 알림(제주희망봉사단) …… 7

제 주 시

제주시 고시 제2022-253호 비 관리청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고시(이호2동 1070 일원) …… 7

제 주 시

제주시 고시 제2022-254호 비 관리청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고시(애월읍 유수암리 2008-2)	8
제주시 고시 제2022-255호 비 관리청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고시(구좌읍 송당리 1114-2)	9
제주시 공고 제2022-1846호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애월읍 소길리 603 일원)	10
제주시 공고 제2022-1847호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오등동 39-2 일원)	11
제주시 공고 제2022-1877호 등록기준 부적합 국내여행업체 3차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1

제주특별자치도보 제1050호

2022년 6월 2일(목요일)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2-72호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6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성장유망중소기업”에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용우수기업”을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분야를 강화하여 선정·지원함으로써 고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고용우수기업과 성장유망중소기업의 통합 운영에 따른 용어의 정비(안 제2조제4호, 제17조)

나. 성장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안 제5조제1항제7호)

4. 조례안 :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2일(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기업과

- 전화 및 전송: (064) 710 - 2633, Fax (064)710 - 2529

- E-mail: kec7702@korea.kr

라. 제출서식

입 법 안	수 정 안	수정 사유

제주특별자치도보 제1050호

2022년 6월 2일(목요일)

◀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

-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2022. 6. 2. ~ 2022. 6. 22.(20일간)
 - 개최주소: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 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조례안(붙임참조)에 대한 의견제출
-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유망하다고”를 “유망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복리증진의 성과가 우수하다고”로 한다.

제5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4호까지의 규정 및 제6호”를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으로 한다.

7.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성장유망중소기업의 시설개선사업 지원

제16조 중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를 “위원회의 운영 등에”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성장유망중소기업의 선정 심의)”를 “(성장유망중소기업의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기업활동 촉진”을 “기업활동 및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로, “기술·경영·판매력”을 “기술·경영·판매력·고용환경”으로, “위원회”를 “위원회의”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날로 부터”를 “날부터”로, “1회에 한한다”를 “한 차례에 한정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우 및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선정되는 성장유망중소기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용우수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은 제17조에 따라 성장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보며, 남은 인증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공 고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2-1979호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

[비 관리청 공공하수도 인허가 관련]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비 관리청 공공하수도 설치 인허가를 받아 준공 완료된 공공하수도 시설물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15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보 제1050호

2022년 6월 2일(목요일)

□ 공공하수도 설치 개요

공공하수도의 명칭	공공하수도(D200mm)	
사업시행의 목적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발생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비 관리청 공공하수도 설치 허가”를 받아 원활한 하수처리를 하기 위함.	
사업시행지의 위치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2680-2 일원	
사업시행지의 면적(연장)	□ 오수지선관로(D200mm) L=100m □ 오수간선관로(D200mm) L=2,556.5m	
공공하수도의 구분	오수관로	
시설용량 및 관거형태	관거형태	오수관로(PE관)
	시설용량	오수지선관로(D200mm) L=100m, 오수간선관로(D200mm) L=2,556.5m, 대정4-1 흡수정(D2100×H4.15) 1개소, 대정9 펌프증설(4→6m³/분) 2대
사용 개시일	2022. 05. 27.	

- 열람기간 및 장소 : 공고일로부터 14일간(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 열람서류 : 하수처리구역도(위치도, 준공도면), 기타 관련서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064-750-79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2-2068호

“핀크스 비오토피아 휴양리조트 개발사업”시행 승인(변경)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관계자께서는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6.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개요

-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400번지 일원
- 사업명: 핀크스 비오토피아 휴양리조트 개발사업
- 사업면적: 145,787m²
- 사업시행자: SK핀크스(주) 대표이사 강석현
- 사업기간: 2013. 7. 2. ~ 2022. 6. 30.
- 총사업비: 1,240억원

제주특별자치도보 제1050호

2022년 6월 2일(목요일)

2. 주요변경내용

구분	기정	변경
사업기간	2013. 7. 2. ~ 2022. 6. 30.	2013. 7. 2. ~ 2024. 12. 31.(증 30개월)
사업비	1,240억 원	3,053억 원(증 1,813)
건축면적	15,974.09㎡	17,064.20㎡
건축연면적	24,921.26㎡	54,226.56㎡
주요도입시설	관광숙박시설[(연립형1동, 43실), 단독형(30동, 30실)], 박물관, 수영장, 온천 등	관광숙박시설[(연립형2동, 49실), 단독형(12동, 12실)], 관광호텔(49실), 박물관, 수영장, 온천 등

○ 변경사유

· 기존 분양형 휴양콘도의 불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콘도미니엄 일부를 운영형 관광호텔로 변경

3. 열람기간: 2022. 6. 2. ~ 2022. 6. 22.

4.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과(☎ 710-3384, FAX. 710-3369)

※ e-mail: zaicheng@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2-2073호

삼매봉밸리 유원지 개발사업시행승인 변경(안) 열람공고

삼매봉밸리 유원지 개발사업시행승인(변경) 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6.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주요변경 사유

○ 사업기간 9개월 연장 :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자재 수급 지연 및 국내 레미콘 운송기사 파업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기간 연장

○ 사업비 변경 : 코로나19 재확산 등에 따른 국제정세 변화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되고 공사지연으로 인한 간접비 증가

2.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호근동 399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삼매봉밸리 유원지 개발사업

4. 면 적 : 110,411㎡(변경 없음)

5.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소록

○ 상호 및 대표이사 : 삼매봉개발주식회사 대표 원미영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호근동 399

6. 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기정) 2008. 11. ~ 2022. 06. 30. ⇒ (변경) 2008. 11. ~ 2023. 3. 31.

제주특별자치도보 제1050호

2022년 6월 2일(목요일)

- 7. 총 사업비 : (기정) 3,293억원 ⇒ (변경) 3,362억원(증 69억원)
- 8. 관련서류 열람 / 기간 : 실음생략 (열람장소 비치) / - 2022. 6. 2. ~ 2022. 6. 22.
- 9.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과 (☎ 710-3843, FAX. 710-3369)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 알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2. 5. 2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록번호	단체명	변경항목	변경사항		
			당초	변경	변경일자
198	제주희망봉사단	대표자	고승길	정성훈	2022. 5. 27.

제주시

제주시 고시 제2022-253호

비관리청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고시

하수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5. 27.

제주시장

비관리청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시행자	법인명	
	대표자	강태*
	등록번호 (생년월일)	1949-11-16
	주소	제주시 오도11길 6-1
시행목적	해당 토지 일원 건축물에서 발생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오수관로 신설	
시행지역	제주시 이호2동 1070 일원	
공공하수도 규모	오수관로(D200) L=29m, 맨홀 2개소	
공사기간	2022. 6월 ~ 2023. 5월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상하수도과(TEL 064-728-7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보 제1050호

2022년 6월 2일(목요일)

□ 위 치 도



제주시 고시 제2022-254호

비 관리청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고시

하수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 관리청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5. 27.

제 주 시 장

□ 비 관리청 공공하수도 공사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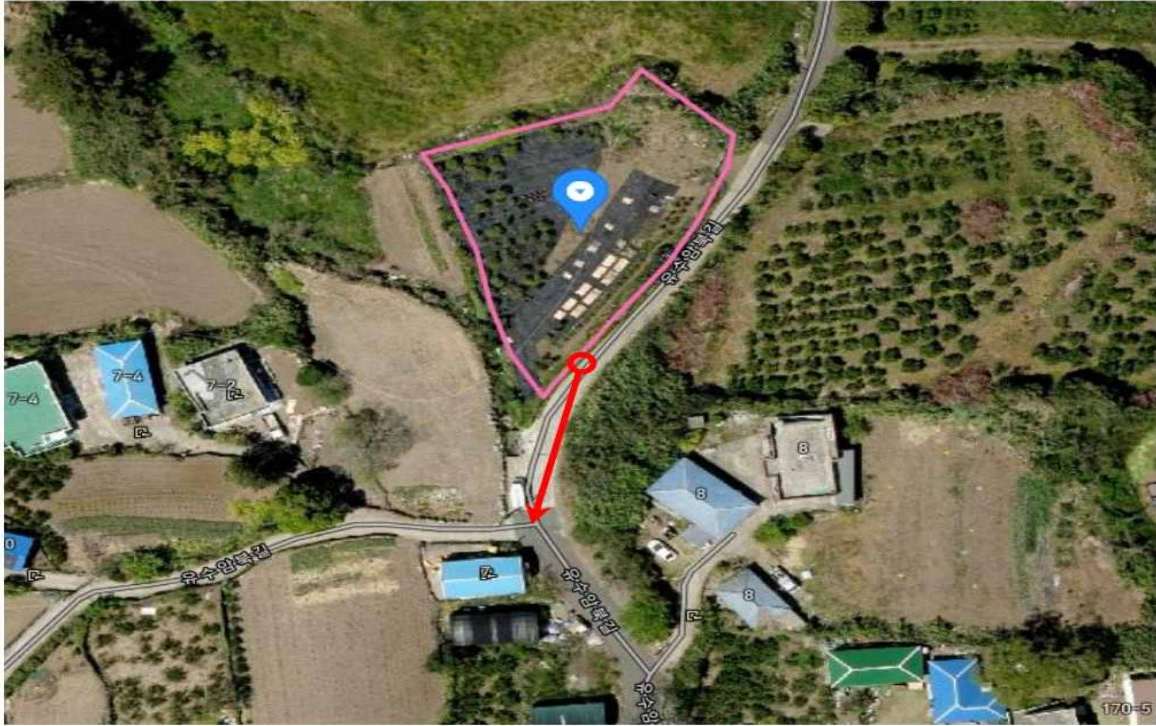
시 행 자	법 인 명	
	대 표 자	김 인*
	등록번호 (생년월일)	1972-04-01
	주 소	제주시 애월읍 광상로 333-**
시 행 목 적	해당 토지 일원 건축물에서 발생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오수관로 신설	
시 행 지 역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2008-2	
공공하수도 규모	오수관로(D200) L=25m, 맨홀 2개소	
공 사 기 간	2022. 6월 ~ 2023. 5월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상하수도과(TEL 064-728-7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보 제1050호

2022년 6월 2일(목요일)

□ 위 치 도



제주시 고시 제2022-255호

비 관리청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고시

하수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 관리청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5. 27.

제 주 시 장

□ 비 관리청 공공하수도 공사 시행

시 행 자	법 인 명	(주)제이*제이
	대 표 자	장 철 *
	등록번호 (생년월일)	1949-11-16
	주 소	제주시 아연로 55*
시 행 목 적	해당 토지 일원 건축물에서 발생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오수관로 신설	
시 행 지 역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1114-2	
공공하수도 규모	오수관로(D200) L=8m, 맨홀 2개소	
공 사 기 간	2022. 6월 ~ 2022. 7월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상하수도과(TEL 064-728-7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보 제1050호

2022년 6월 2일(목요일)

□ 위 치 도



제주시 공고 제2022-1846호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

[비 관리청 공공하수도 인허가 관련]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비 관리청 공공하수도 설치 인허가를 받아 준공 완료된 공공하수도 시설물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15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7일

제 주 시 장

□ 공공하수도 설치 개요

공공하수도의 명칭	공공하수도(D200mm)		
사업시행의 목적	건축물 신축에 따른 발생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비 관리청 공공하수도 설치 허가”를 받아 원활한 하수처리를 하기 위함.		
사업시행지의 위치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603 일원		
사업시행지의 면적(연장)	오수관로(D200mm) L=34m		
공공하수도의 구분	오수관로	하수처리구역	0.000473 km ²
시설용량 및 관거형태	관거형태	오수관로(PVC관)	
	시설용량	오수관로(D200mm)	
사용 개시일	2022. 05. 27.		

□ 열람기간 및 장소 : 공고일로부터 14일간(제주시청 상하수도과)

□ 열람서류 : 하수처리구역도(위치도, 준공도면), 기타 관련서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상하수도과(064-728-7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보 제1050호

2022년 6월 2일(목요일)

제주시 공고 제2022-1847호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

[비 관리청 공공하수도 인허가 관련]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비 관리청 공공하수도 설치 인허가를 받아 준공 완료된 공공하수도 시설물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15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7일

제 주 시 장

□ 공공하수도 설치 개요

공공하수도의 명칭	공공하수도(D200mm)		
사업시행의 목적	건축물 신축에 따른 발생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비 관리청 공공하수도 설치 허가”를 받아 원활한 하수처리를 하기 위함.		
사업시행지의 위치	제주시 오등동 39-2 일원		
사업시행지의 면적(연장)	오수관로(D200mm) L=7m		
공공하수도의 구분	오수관로	하수처리구역	0.005249 km ²
시설용량 및 관거형태	관거형태	오수관로(PE 이중벽관)	
	시설용량	오수관로(D200mm)	
사용 개시일	2022. 05. 27.		

- 열람기간 및 장소 : 공고일로부터 14일간(제주시청 상하수도과)
- 열람서류 : 하수처리구역도(위치도, 준공도면), 기타 관련서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상하수도과(064-728-7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공고 제2022-1877호

등록기준 부적합 국내여행업체 3차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위반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2]의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 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 음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3차 행정처분(사업정지 1개월)
2. 당 사 자

등록번호 (업종)	업체명	대표자	사무실 소재지	반송사유
2012-93 (국내여행업)	(주)제주컨벤션여행사	이*원	제주시 한림읍 명재로 100-47, 제5동 관리실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

제주특별자치도보 제1050호

2022년 6월 2일(목요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6조 (등록기준) 위반 - 사무실 미확보

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가. 관광진흥법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나.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처분기준은 별표2와 같다.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법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1)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5. 공고 기간 및 의견제출처

가. 공고 기간 : 2022. 5. 31. ~ 2022. 6. 16. [16일간]

나. 의견제출기간 : 2022. 6. 16.(목)까지

다. 의견제출처 : 제주시 관광진흥과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제주시청)

- 연락처 : 064-728-2784, 팩스 : 064-728-2759

6. 게시장소 : 제주시 등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제주도보

7. 기타사항

가.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시 관광진흥과(064-728-27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5. 31.

제 주 시 장